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5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20일

발의자 : 오승철 의원

1. 제안 이유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여비 지급표의 운임 항목에 “일비”와 “식비”를 추가

나. 국내 출장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일비 : 20,000 → 25,000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 → 100,000
광역시 60,000 → 80,000
그 밖의 지역 50,000 → 70,000
- 식비 : 20,000 → 25,000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0. ~ 12. 5.
- 의견내용 :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

하남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

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